환경부 공고 제2018-284호

2018년도 전기자동차 왼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

2018년도 전기차 완속충전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18. 04. 04.

환 경 부

1. 충전기 보급사업 개요

○ 보급대수 : 12,000대(*18년 예산기준)

ㅇ 보급기간 : '18.4.4 09:00 ~ '18.12.29 16:00

○ 보급기기 :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기

< 충전사업자별 주요제품 >

충전사업자	충전기	종류	충전사업자	충전기	종류
㈜지엔텔			㈜포스코ICT		diametry in
㈜에버온			대영채비㈜		
(A)KT			㈜제주전기자동 차서비스		
한국전기차충 전서비스㈜			파워큐브코리아㈜		

※ 상세 제품내역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(ev.or.kr)에서 열람 가능

2. 구매보조금 신청대상

○ 공용충전기 : 공동주택, 사업장 등

○ 비공용충전기 : '18년 전기차(보조금 지급대상 차종) 구매자(또는 법인)

○ **과금형 휴대용충전기** : '18년 전기차(보조금 지급대상 차종) 구매자(또는 법인)

3. 구매보조금 신청자격

○ 공용충전기 :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, 사업장 등

○ 비공용충전기

- 단독주택 : 소유자,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

- 공동주택 :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

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

○ **과금형 휴대용충전기** :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자

4. 충전기 구매보조금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지원조건		지원한도		
1 E	개방여부	지원물량	1기	2~5기	6기 이상
공용	완전개 방	주차면	400	350	300
<u> </u>	부분개방	100면당 최대 1기	320	280	230
비공용	미개방	전기차 1대당 최대 1기	최대150		

- * 비공용 충전기
 - 벽부형 및 스탠드형 등을 신청할 경우 150만원 지원(정액 지원)
 - 과금형 휴대용충전기(계량, 통신기능이 있는 충전기)를 신청할 경우 전용 콘센트 설치비를 포함하여 90만원 지급
 -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만 신청할 경우 50만원 지원(정액 지원)
 - 전기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충전기는 비공용으로 신청시 설치비 90만원 지원(정액지원)
- ** 공용으로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콘센트 설치비는 40만원/개, 최대 5개까지 지원, 무선인식표지(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등)는 1.5만원/개, 최대 100개 까지 지원

5. 충전기 설치신청 및 대상자 선정

○ 신청기간 : '18.4.4(수) ~ '18.12.29(금) <u>※ 보급물량 소진시 신청 종료</u>

○ 신청방법

-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·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·접수

○ 신청서류

- (공용 충전기)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
- (비공용 충전기) 주민등록등본(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),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, 충전기 설치·이용 승낙서(필요시), 자동차 등록증(또는 구매계약서)

○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

-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(스캔파일)을 충전사업자·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
-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을 부여하되, 지역별 전기차 보급수요 및 실적, 공용충전기 신청여부 등에 따라 순번 조정 가능
- '18년 전기차 구매자 중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또는 공용충전기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
- 과금형 콘센트, 다채널 충전기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주차분쟁이 없는 충전기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

○ 특이사항

- 비공용충전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,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지원
- 신청자의 거주지(주민등록 기준)나 근무지(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)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
-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, 공동주택 내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용충전기 보조금 미지급
- 금년부터 차량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을 분리·집행하므로, 차량보조금 수급지역과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보조금 지급
 - ※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 및 충전기 보조금 환수조치 가능

6.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

기관	주요 역할	연락처
통합콜센터	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-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-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	
환경부 (대기환경과)	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-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,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-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	1661-0970
한국환경공단 (자동차환경계획팀)		